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3 . 9 . 19

시민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9일 조기태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I. 개정이유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통장의 위촉 상한연령 및 통·반조직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현행 1통의 기준 6개 반 내지 8개 반을 10개 반으로 2개 반을 늘려 상향조정하고,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를 60가구로 20가구를 늘려 상향조정하여 특수한 지역사정의 경우에 통·반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 나. 통장의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 해촉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75.9세임을 감안하여 통장 위촉 상한연령을 6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5세 늘리되,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위촉규정을 삭제하여 전·후 문맥을 고르게 정비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 라. 조례의 시행기일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통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여 통장의 지위를 존중·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둠(부칙 제1항 및 제2항).

III.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으로서의 통·반 운영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조제6항의 규정에는 “제5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 자치단체의 통·반 등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1988년 5월 1일 이 조례를 제정하여 통·

반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차원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8년 5월 1일 통·반설치조례 제정시 표준안대로 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제정 이후 현재까지 15년동안 행정변화와 지역여건 등 제반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보완할 사안이 대두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동 개정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사항

첫째, 통·반의 조직(안 제2조)

2003. 8. 31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 현황을 별표 1의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통의 경우 6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정한 자치구가 17개 구, 6개 반 내지 10개 반 1개 구, 6개 반 내지 12개 반 3개 구, 8개 반 내지 12개 반 3개 구, 6개 반 내지 11개 반은 1개 구로서 자치구의 68%가 당초 표준안대로 6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특수한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현행 8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2개 반을 상향조정한다면 통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3항의 “반은 20가구 내지 60가구”로 조정한 것과 관련하여 먼저 2003. 8. 31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 현황을 별표 1의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반의 경우 20가구 내지 40가구로 정한 자치구가 19개 구, 20 내지 60가구 2개 구, 40 내지 60가구 1개 구, 30 내지 60가구 1개 구, 30 내지 50가구 1개 구, 20 내지 50가구는 1개 구로서 자치구의 76%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당초 표준안대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특수한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현행 20가구에서 60가구로 20가구를 상향조정한다면 반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통장의 임기(안 제4조)

2003. 8. 31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 현황을 별표 1의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한 자치구가 21개 구, 2년으로 하되 2회 한하여 연임 2개 구,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 2개 구로서 자치구의 84%가 당초 표준안대로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과 같이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해촉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임기 연장을 방지할 수 있어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안 제5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안 제5조제2항에서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남자 72세, 여자 79세로서 평균 75세임을 감안하여 현행 통장 위촉상한연령을 6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5세 상향조정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다만, 65세 이하로 5세 늘리되,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예외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65세 이상인 자를 위촉할 수 있

게 되는 제량의 여지를 남겨 두게 되는 바, 동조항을 개정하려는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동조항 개정취지 및 전·후 문맥으로 보아 향후 논란의 시비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3. 8. 31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 현황을 별표 1의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통장의 위촉상한연령과 관련하여 60세 이하로 정한 자치구가 15개 구, 62세 이하 1개 구, 63세 이하 1개 구, 65세 이하가 8개 구로서 자치구의 60%가 당초 표준안대로 60세 이하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별표 3의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71세 이상 고령 통장은 17명이고, 66세~70세에 해당하는 통장은 41명으로서 교체대상 통장이 58명이나 되어 전체 통장수의 16.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째, 부칙 (제1항 시행일, 제2항 경과조치)

부칙 제1항에서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것은 집행부에서 불합리한 통·반 및 65세 이상 통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통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고 통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것은 재임 중인 통장에 대해 임기동안 그 지위를 존중·보호·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집행부 의견조회 사항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03년 8월 29일 집행부에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여 동년 9월 8일까지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관계로 인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안전심사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봅니다.

IV.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별표 1)

타 자치구 통·반조직 조례 현황

2003. 8. 31 현재

구 별	통 조직	반 조직	임 기	통장 위촉
종 로	6~8개반	20~40가구	2년, 연임 가능	60세 이하
중 구	6~10개반	20~60가구	2년, 연임 가능	30세 이상 65세 이하
용 산	6~8개반	20~40가구	2년, 연임 가능	30세 이상 62세 이하
성 동	6~12개반	20~40가구	2년, 연임 가능	30세 이상 60세 이하
광 진	8~12개반	40~60가구	2년, 2회 한하여 연임	60세 이하
동대문	6~8개반	20~40가구	2년, 연임 가능	30세 이상 60세 이하
중 랑	6~8개반	20~40가구	2년, 연임 가능	60세 이하
성 북	6~8개반	40~60가구	2년, 연임 가능	30세 이상 65세 이하
강 북	8~12개반	30~60가구	2년, 연임 가능	30세 이상 65세 이하
도 봉	6~12개반	20~60가구	2년, 연임 가능	30세 이상 60세 이하
노 원	8~12개반	30~50가구	2년, 1회 한하여 연임	30세 이상 60세 이하
은 평	6~8개반	20~40가구	2년, 연임 가능	30세 이상 65세 이하
서대문	6~11개반	20~40가구	2년, 연임 가능	30세 이상 63세 이하
마 포	6~8개반	20~40가구	2년, 연임 가능	20세 이상 65세 이하
양 천	6~8개반	20~40가구	2년, 연임 가능	30세 이상 60세 이하
강 서	6~8개반	20~40가구	2년, 연임 가능	60세 이하
구 로	6~8개반	20~40가구	2년, 연임 가능	30세 이상 65세 이하
금 천	6~8개반	20~40가구	2년, 연임 가능	30세 이상 65세 이하
영등포	6~8개반	20~40가구	2년, 1회 한하여 연임	60세 이하
동 작	6~8개반	20~40가구	2년, 연임 가능	30세 이상 65세 이하
관 악	6~12개반	20~50가구	2년, 연임 가능	30세 이상 60세 이하
서 초	6~8개반	20~40가구	2년, 연임 가능	30세 이상 60세 이하
강 남	6~8개반	20~40가구	2년, 2회 한하여 연임	30세 이상 60세 이하
송 파	6~8개반	20~40가구	2년, 연임 가능	30세 이상 60세 이하
강 동	6~8개반	20~40가구	2년, 연임 가능	30세 이상 60세 이하

(별표 2)

통장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 명) 2003. 7. 31 현재

구 분	성 별			연 령 별					
	계	남자	여자	40세 이하	41세 ~ 49세	50세 ~ 60세	61세 ~ 65세	66세 ~ 70세	71세 이상
통장수	346	295 (85.3%)	51 (14.7%)	68	123	58	39	41	17

(별표 3)

통·반장 현황

2003. 7. 31 현재

동 명	구 분				비 고
	통 수	통장수	반 수	반장수	
계	347	346	2,236	2,215	통장 공석 1 반장 공석 21
청운동	10	10	60	60	
효자동	16	16	133	132	반장 공석 1
사직동	26	26	186	176	반장 공석 10
삼청동	11	11	83	80	반장 공석 3
부암동	19	19	135	135	
평창동	18	18	156	156	
무악동	13	13	90	90	
교남동	17	17	120	120	
가회동	12	12	98	93	반장 공석 5
종로1~4가동	38	38	100	100	
종로5·6가동	22	22	120	120	
이화동	18	18	136	136	
혜화동	15	15	105	105	
명륜3가동	15	15	110	110	
창신1동	18	18	101	101	
창신2동	25	25	147	146	반장 공석 1
창신3동	16	16	113	113	
승인1동	16	15	118	118	통장 공석 1
승인2동	22	22	125	124	반장 공석 1